

어선건조·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(제10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라.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,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

- 1)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
- 2)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·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	법 제9조의2 제1항제1호	등록 취소	-	-

한 경우				
나.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	법 제9조의2 제1항제2호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
다.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어선건조·개조업을 한 경우	법 제9조의2 제1항제3호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
라.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해당 어선의 선체·기관·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경우	법 제9조의2 제1항제4호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
마.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	법 제9조의2 제1항제5호	등록 취소	-	-